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40
----------	-------

제출년월일 : 2024. 3.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실외 놀이 환경이 제약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제3조)
-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 등(안 제4조~제7조)
- 이용 및 입장 제한 사항,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안 제8조~제11조)
- 위탁운영, 재정지원(안 제12조~제13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 18. ~ 2024. 2. 7.(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법무팀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
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제공
3.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 아동으로 한다.
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중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단,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1인)	비 고
아동	1회	2,000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보호자		1,000원	



##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한 보호자</li> <li>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li> <li>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li> <li>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li> <li>1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li> <li>15. 아동과 동반한 65세 이상 어르신</li> <li>16. 아동 1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1명</li> </ol>	<p>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등)</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관련조문: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3조(재정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비용추계기간: 2024. 1. ~ 2028. 12.
- 나. 비용지원대상: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당 운영비 및 인건비
  - 운영비: 소형(150m<sup>2</sup>) 월 150만원 중형(150~500m<sup>2</sup>) 월 170만원 대형(500m<sup>2</sup>초과) 월 190만원
    - ※ 중형 3개소, 대형 1개소 기준 비용추계
  - 인건비: 「202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준용
    - ※ 중형: 4명(시설장1, 돌봄1, 관리직2), 대형: 5명(시설장1, 돌봄1, 관리직3) 기준 비용 추계

인건비 지급기준(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를 적용,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수당 포함)				
급 ( 호 봉 )	4급(12호봉)	5급(6호봉)	관리직(6호봉)	관리직(3호봉)
급여총액(천원)	52,436	42,376	41,854	40,818

### 다.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및 확대 계획

구분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 (상암동)	1개소 (쌍룡산)	2개소 (서교동, 창전동)	-	-	4개소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사비보조금(b)	147,251	279,857	545,069	545,069	545,069
세출	○운영비	22,800	43,200	84,000	84,000	84,000
	○인건비	218,302	395,786	750,754	750,754	750,754
	소계(a)	241,102	438,986	834,754	834,754	834,754
□ 총 비용(a-b)		93,851	159,129	289,685	289,685	289,6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의존 재원	시비보조금	147,251	279,857	545,069	545,069	545,069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93,851	159,129	289,685	289,685	289,685	
합계		241,102	438,986	834,754	834,754	834,754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재원 및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아동보육과 김근욱
연 락 처	02-3153-168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2명 시비 100%, 3~6명 시비 30%, 구비 70%, 6명 이상 구비 100%
  - ※ 4급(시설장) 12호봉까지, 5급(돌봄요원) 6호봉까지, 관리직(운영/안전요원) 6호봉까지 지원
- 운영비: 소형(150㎡) 월 150만원, 중형(150~500㎡) 월 170만원, 대형(500㎡초과) 월 190만원